

## 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오 현 석\*

- 
- I. 서 론
  - II. 손해배상청구권의 개념
  - III. SGA상 손해배상청구권
  - IV. CISG상 손해배상청구권
  - V. 결 론
- 

주제어 :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액 산정, 예견가능성, 손해경감

### I. 서 론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에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고 이후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위반을 범한 경우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계약위반에 대한 다양한 구제권이 있겠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권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영미법계에서는 구제권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목적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계약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동등한 경제적 상태로 되돌리는데 있다. 한편, 손해배상

---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E-Mail : peter@daegu.ac.kr

청구권의 목적은 국내법, 국제통일법, 국제규칙 등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예견가능성, 즉 계약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원인(remoteness)인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각 법규범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영국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이하 SGA)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제50조에서는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51조에서는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구제권으로서 제49조 매도인의 대금청구 소송, 제52조 매수인의 특정이행청구, 제53조 매도인의 담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 제54조 이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고유한 구제권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법으로서 자리 잡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적용규정으로 제74조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 제75조 대체거래와 손해액, 제76조 시가에 기초한 손해액, 제77조 손해경감의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SGA와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여 무역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SGA와 CISG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추가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규정의 해석에 있어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II. 손해배상청구권의 개념

### 1.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손해(loss)는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 또는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생긴 불이익으로 정의된다.<sup>1)</sup> 또한 Harris는 손해가 ①당사자의 경제적 권리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여야 하고, ②당사자의 재무상태에 감소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유형의 목적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p. 112.

물 또는 무형의 이익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손해의 발생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손해의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는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그 분류 형태로서 파악될 수 있다.<sup>3)</sup>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의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손해(*general losses*)와 특별손해(*special losses*)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위반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또한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sup>4)</sup>

둘째, 금전적 손해(*pecuniary loss*)와 비금전적 손해(*non-pecuniary loss*)의 분류가 있다. 전자는 매매에서의 손해와 같이 계약위반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계약의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또는 멸실로 인하여 이익의 손실과 같은 결과적 손해를 말한다. 비금전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 물리적 손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금전적 손해에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sup>6)</sup> 한편,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국제물품매매를 체결하는 목적은 양 당사자 모두 수익의 창출일 것이다. 결국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비금전적 손해 보다는 금전적 손해에 관심이 더 있을 것이다. 즉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당사자는 당해 국제물품매매로부터 기대이익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그 상실된 기대이익만큼의 재정적 회복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거래를 규율하는 *SGA*나 *CISG*에서도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손해의 경중에 따라서 명목적 손해(*nominal loss*)와 실질적 손해(*substantial*

2) Harris, Donald, David Campbell, and Roger Halson, *Remedies in Contract and To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75.

3)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5, p. 427.

4)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결과적 손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p. 432.

5) 손해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분류하는 것은 대륙법계의 입장이고 손해를 일반손해, 부수적 손해 및 결과적 손해로 구분하는 것은 미국 통일상법전 체제 하에서의 분류이다.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 하에서 부수적 손해와 결과적 손해로 구분하는 이유는 부수적 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증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GA*의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신창섭, 상계논문, p. 432, 참조).

6) Goode, Roy, Herbert Kronke, and Ewan McKendrick.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133.

loss 또는 ordinary loss)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승소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여기서 명목적 손해는 실제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실제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sup>7)</sup>

넷째, 손해의 대상이 되는 법익에 따라 기대이익(expectation profit)손해와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대이익은 계약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 성립 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이 얻지 못한 이익으로서 물품의 전매차익, 사용이익 등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sup>8)</sup> 반면, 신뢰이익은 계약위반의 발생을 염두 해두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리라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즉 계약을 이행하리라는 전제하에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데, 이를 소극적 이익(negatives interest)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계약비용,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조사비용, 대금의 차용, 운송수단의 준비, 제3자의 유리한 매매제의를 거절한 경우, 물품의 계약 적합성을 믿고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sup>9)</sup>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부분의 국내법에서와 같이 영국법에서도 주요 구제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Burrows는 “계약위반에 따른 사법적 구제조치로서 배상(compensation),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예방(prevention), 권리청구(declaring rights), 반환 restitution) 그리고 처벌(punishment)이 있으며, SGA는 이들 중 주로 반환과 처벌을 제외하고 앞의 네 가지의 구제조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계약위반에 대한 일반적이고, 주된 구제방법이 손해배상임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영국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부여된다. 또한 그 밖에도 여러 제한이 존재하는 형평법(equity law)상의 특정이행<sup>11)</sup>과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구

7)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2002, pp. 347~348.

8) Reza Beheshti, “Comparative and Normative Analysis of Damages Under the SGA and the CESL”, *St. Thomas Law Review* 26, 2013, p. 2.

9) 양창수·김재형, 전제서, 2015, p. 428.

10) Reza Beheshti, *op. cit.*, p. 2.

11) SGA상 특정이행청구권은 법원이 특정물매매에 대해서만 법원이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희귀하거나 독특하며 유일한 물품의 매매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정이행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특정품이 아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특정이행청구권 보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피해당사자를 구제하고 있다(민주희, “SGA에서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p. 107~108, 참조).

제는 차이점이 있다.<sup>12)</sup> 즉, 강제이행은 형평법상의 구제제도인 반면 손해배상은 보통법(common law)상의 구제제도이다. 요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피해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권리중 하나로서 계약위반자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가능한 피해당사를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등한 입장에 두려는데 있다.<sup>13)</sup> 또한 영국법원의 *Alfred McAlpine Construction v. Panatown*사건의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핵심이 배상(compensatory)이라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sup>14)</sup>

## 2. 손해의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중 하나는 예견가능성(foresight)이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예견가능성을 따르는 것을 제한배상주의라 한다. 피해당사자는 그의 손해가 예견불가능하지 않은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sup>15)</sup> 이때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naturally)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사물의 통상적 과정에서(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things) 공정·합리적으로(fairly and reasonably) 생각할 수 있는 손해이어야 한다. 또한 당해 손해는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예상하기에 합리적인 것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sup>16)</sup> 다만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감당함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sup>17)</sup>

영국에서의 손해배상의 특징 중 하나는 제한배상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배상주의는 프랑스민법의 예견가능성설을 도입하여 영미법에서 배상주의를 관찰하고 있다.<sup>18)</sup> 영미법에서는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2)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p. 511.

13) 서희원, 전게서, 2002, p. 347.

14) Ewan McKendrick, "The Common Law at Work: The Saga of Alfred McAlpine Construction Ltd v Panatown Ltd." *Oxford University Commonwealth Law Journal* 3(2), 2003, pp. 145~150.

15) Reza Beheshti, *op. cit.*, p. 3.

16) 서건환, 국제거래계약실무, 한국금융경제연구소, 1998, p. 129.

17) Andrew Burrows, "Legislative Reform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English Perspective", *EDINBURGH Law Review* 155, 1997, p. 157.

18) 프랑스는 예견가능성론에 입각하여 제한배상주의를 입법하고 있으며,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제한배상주의는 Molinaeus가 주장하고 프랑스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 Pothier가 이를 받아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들 모두 예견 가능성설에 의한 제한배상주의가 적용되고 있다.<sup>19)</sup>

한편, 손해배상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을 적용하여 제한배상의 원칙(rules of remoteness)<sup>20)</sup>이 적용된 시초의 판례로는 *Hadley v. Baxendale* 사건<sup>21)</sup>이 있다. 동 사건에서 판사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손해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본 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운송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는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대체 부속품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그 부속품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항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sup>22)</sup>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SGA의 경우 제50조 제2항과 제51조 제2항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 각각의 손해배상액은 자연적인 통상손해와 예견되어진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3. 영국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적 판정기준

영국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판례적 기준은 *Pake, B Robinson v. Harman*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동 사건에서 판사는 “보통법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피해당사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릴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당해 판결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인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처럼

---

여 입법이 이루어졌다(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p. 175, 인용).

19) 김상용, 상계서, p. 172.

20) 제한배상의 원칙은 소원성의 원칙(the principle for remoteness of damage)으로도 해석된다. 피해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예견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directly)이고 결과적(naturally)인 것을 말한다(민주희, 전제논문, p. 112, 참고).

21) 동 사건은 방앗간을 운영하는 원고와 피고인 운송업자가 제분기의 크랭크축의 운송에서, 피고가 예정된 기간 내에 운송을 하지 못하여 원고의 방앗간이 예정기간보다 더 쉬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때 원고는 부러진 크랭크 축을 대신할 크랭크 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방앗간에는 여분의 크랭크 축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는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방앗간이 쉬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운송계약 체결시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Hadley v. Baxendale*, 9 EX. 341, 156 Eng. Rep. 145, 1854 : 김상용, 전계서, p. 176, 참고).

22) 김상용, 상계서, pp. 175~176.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이유는 매매거래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따라 그러한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이익의 손해만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위반 후의 상황을 계약위반 직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sup>23)</sup>

또한 영국에서는 *Anglia Television v. Reed* 사건을 통해 피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이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뢰이익은 무효인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로서 소극적 계약이익이며, 계약체결비용, 이행준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는 “[원고]는 기대이익과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두 개의 이익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이익이 손실과 신뢰이익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피해당사자가 기대이익과 신뢰이익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sup>24)</sup>

요컨대, 영국의 손해배상기준에 관한 판례적 입장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당사자에 대해 기대이익과 신뢰이익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III. SGA상 손해배상청구권

SGA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약 당사자의 구제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SGA 제49조에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SGA 제51조에서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들은 당사자만 각각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해태 또는 거절한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의무 위반 당사자에게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1.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

SGA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을 제49조 ‘대금청구 소

23) *Robinson v. Harman*, [1843-60] All E.R. 383, 1848, p. 850.

24) *Anglia Television Ltd. v. Reed*, [1972] 1 Q.B. 60 (C.A.) : Chen-Wishart, Mindy,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483.

송'(action for price), 제50조 '인수거절의 손해배상액'(damages for non-acceptance)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GA에서는 매도인의 구제방법을 다른 계약법들과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금청구 소송의 경우 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구제권으로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대금청구소송은 매도인이 물품인도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GA 제49조 제1항에서는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매수인이 물품의 대금을 불법으로 해태 또는 거절한 경우 매도인에게 대금청구 소송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제2항에서는 대금이 물품의 인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일자에 지급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한 매수인이 이를 불법으로 해태 또는 거절한 경우에 매도인은 대금청구소송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매수인의 제1의무로서 대금지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히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매수인은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은 대금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매수인의 대금지급 위반이 불법으로 해태 또는 거절(wrongfully neglects or refuses)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의 불법이 아닌 대금지급의 해태나 거절은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 면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한편, 환어음과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 후가 아니면 대금청구소송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어음의 만기일까지는 매도인이 대금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sup>26)</sup>

SGA 제50조 제1항은 매수인의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을 불법으로 해태 또는 거절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수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제49조 1항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 후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한 후의 대금지급 거절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 조항들은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불법적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구제방법으로서 대금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GA 제50조 제2항과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SGA의 손해배상은 계약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예견된 손해액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25) Reza Beheshti, *op. cit.*, p. 8.

26) 윤광운·박정기·최영봉·조현숙, *영국물품매매법*, 탐북스, 2011, p. 203.

첫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위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손해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발생한 계약위반의 실질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도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명목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위반과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근인(*proximate*)의 관계에 있어야 하며, 만약 인과관계가 원인(*remoteness*)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한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Hadley. Baxendale*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위반과 손해가 원인관계에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당해 손해에 대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으므로 제한배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SGA 제50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의 판정기준이 통상적 사건의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예견된 손해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수량화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물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가격(*contract value*)과 시장가격(*market value*)의 차액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가격(*market value*)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은 물품을 인수했어야 할 당시 가격 또는 인수의 시기를 함의하지 않았다면 인수를 거절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sup>27)</sup> 이러한 계산방법을 추상적 방법(*abstract method*)에 의한 손해배상 판정기준이라 한다.<sup>28)</sup> 여기서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이유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물품을 인도받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손해경감의 원칙하에 당해 물품을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 한정하기 위해서 이다.<sup>29)</sup> 따라서 만약 시장에서 재판매가 없을 경우 SGA 제50조 제3항은 적용되지 못한다. 또한 당해 조항은 재판매시의 장소와 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27) *Erie County Natural Gas and Fuel Co. v. Carroll* 사건에서 판단한 시장가격은 손해배상액 사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며, 상업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즉 동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가스를 인도하지 않은 결과 매수인이 대체거래를 진행하면서 추가된 설치장비 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전매하였고 법원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이를 제외시켰다(윤광운 외 3인, 상계서, p. 212 : 민주회, 전개논문, p. 105, 인용).

28) Treitel, Guenter H,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A Comparative Account*,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1988, p. 22.

29) 한편, SGA 제51조 제3항에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시장에서 계약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즉시 구매하여야 하며 그 결과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재정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이익의 보호목적에 대해서 당해 조항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매수인이 대체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대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가격규칙을 강조하고 있다(Reza Beheshti, *op. cit.*, p. 5).

## 2.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SGA에서 매수인의 구제방법은 제51조 인도거절의 손해배상액(damages for non-delivery), 제52조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제53조 담보위반의 구제방법(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제54조 이자(interest)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SGA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을 불법으로 해태 또는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인도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즉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불법적으로 해태하거나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물품은 *Millar's Machinery Co. v. David Way & Son*(1934)의 판례에서와 같이 만약 특정물인 경우 특정이행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특정이행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특정물의 경우 특정이행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것은 약정물의 인도의 불법해태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SGA 제35조 상 물품수령 또는 승인(receipt or approval of the goods)에 해당하므로 거절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인도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sup>30)</sup>

둘째,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지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인도지체는 조건위반이며 동시에 물품인수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매도인의 담보권(right of warranty)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권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 인도지체와 달리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관련된 구제권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 적용된다.<sup>31)</sup>

셋째, 매수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서류 등을 받았으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물품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가진다. 물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매수인의 청구는 물품의 인도 또는 물품 상당금액의 지불이다. 이 청구는 물품의 불법점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sup>32)</sup>

30) 민주희, 전제논문, pp. 106~107.

31) 오세창, “국제물품매매계약하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 무역상무학회, 2002, p. 46.

32) 윤광운 외 3인, 전제서, p. 222.

SGA 제51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매수인의 손해배상 판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항들은 SGA 제50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당사자만 다르고 동일하다.<sup>33)</sup>

한편, SGA 제53조에서는 담보위반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의 담보위반이 존재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측의 조건위반을 담보위반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러한 담보위반의 사유만으로 물품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감액권 또는 소멸하는 담보위반의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품질에 관한 계약부적합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하자 없는 물품과 하자있는 상태의 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확정하여야 한다.<sup>34)</sup>

## IV. CISG상 손해배상청구권

### 1.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CISG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다른 구제권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35)</sup> 반면 SGA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구조에 차이점이 있다.

CISG 제74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Honnold는 동 조문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의 발생상황이 무한하여 어떠한 법규범에서도 그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손해액산정을 규칙으로서 규정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법규범에서는 손해산정의 일반원칙만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sup>36)</sup> 이

33) Reza Beheshti, *op. cit.*, p. 11.

34) 윤광운 외 3인, 전제서, p. 228.

35) CISG가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은 매도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특정이행 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 확정권으로 구성되며, 매수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특정이행 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하자보완 청구권, 대체품인도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분 거절권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며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다른 구제권을 청구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특징이 있다.

에 CISG 제74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액은 위반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피해당사자의 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CISG 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한 결과로서<sup>37)</sup> 보상기능을 가지며 또한 손해배상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피해당사자가 있었을 것과 동일한 경제적인 지위에 존재하도록 하는 가정적 기능을 한다. 다만 CISG 상 손해배상은 징벌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sup>38)</sup> 그러나 계약체결시 예견가능한 경우(제74조),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제77조), 면책요건이 충족된 경우(제79조), 피해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제80조)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sup>39)</sup>

둘째, 계약위반과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CISG는 당해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SGA의 경우 계약위반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결국 CISG에서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사실적 인과관계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sup>40)</sup>

셋째, CISG 제74조는 완전배상주의(principles of full compensation)<sup>41)</sup>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제한의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배상주의는 예견가능성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CISG 제74조 전체를 해석할 때는 제한배상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2)</sup> 여기서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

36) 오원석,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p. 563.

37)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권처럼 계약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로서 행사될 수 있다(Treitel, Guenter H, *op. cit.*, p. 24 : 황지현·최영주, “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CISG(1980)와 PICC(2004)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p. 159, 참조).

38) 석광현, 전게서, p. 277.

39) 광민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8호, 2013, p. 644; 황지현·최영주, 전게논문, p. 158.

40) 황지현·최영주, 전게논문, pp. 158~159.

41) CISG 제74조 1문에서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등’은 완전배상주의를 뜻하며 ‘금액’은 금전배상주의를 의도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계약위반, 손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으로 구성되며, 그 효과로는 완전배상과 금전배상이 될 것이다.

액의 배상이라는 완전배상주의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액은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그 금액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 역시 불합리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sup>43)</sup>

한편, CISG 제74조는 피해당사자의 손해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에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물품의 계약부적합 또는 인도의 지체로 매수인의 공장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계약체결 시 이러한 계약위반의 발생이 조업중단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GA의 손해배상에 관한 예견가능성 제한과 동일하며 CISG의 제74조의 경우 영미법을 계수한 것으로 판단된다.<sup>44)</sup>

## 2. 계약해제시의 손해액 산정

CISG는 계약해제시의 손해액 산정을 대체거래 유무에 따라 제75조와 제76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CISG 제75조는 대체거래의 대금과 계약상의 대금과의 차이를, 제76조는 시장가격과 계약상의 대금과의 차이를 손해로 본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피해당사자는 제74조에 따라 그 밖의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체거래에 대한 산정

계약해제 후 대체거래는 매수인의 경우 제3자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고, 매도인은 제3의 매수인을 찾아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해 상황들은 원래

42) 석광현, 전계서, p. 278.

43) 오원석, 전계역, p. 564.

44) CISG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예견가능성(foresight)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견가능성 기준은 본래 영국과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원칙이다. 그러나 제74조가 영미 계약법을 통해 규정된 것이라고 하여 당해 조문이 영미 계약법의 예견가능성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제74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74조는 국내법적 원칙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Franco Ferrari, "Homeward Trend and Lex Forism Despite Uniform Sales Law", 13 *Vindobona J. Int'l. L. & Arb.* 15, 2009, pp. 17~18 : 신창섭, 전계논문, pp. 426~427, 인용).

의 계약조건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분리한 상황들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의무를 지우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한 것이다.<sup>45)</sup>

CISG 제75조는 계약의 해제 후 대체거래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이 해제되고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의 경우 대체품 매수를, 매도인의 경우 재매각을 했을 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로서 양 당사자는 각각 계약대금과 대체거래 대금과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손해는 대체거래의 대금과 계약상 대금의 차이가 될 것이다.

대체거래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의 결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래의 계약과 충분한 시간적 및 사안적 관련성을 가지고 그에 대신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피해당사자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거래로 보지 않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sup>46)</sup>

CISG 제75조는 그 밖의 손해의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물품의 검사비용, 보관비용, 반송비용 및 대체거래에 따른 중개비용, 운송비용, 창고비용 등이 있다. 다만 매수인이 전매를 통하여 얻지 못한 실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만약 매도인이 적기에 인도하였다면 일정한 가격으로 전매하였거나 전매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2) 시가에 대한 산정

CISG 제76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 후 시가거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조항은 시가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물품수령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계약해제 시의 시가와 물품수령 시의 시가로 구분된다. 다만 당해 조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며,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구매와 재매각이 없어야 하고, 계약대금과 시가와와의 차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CISG 제74조 및 제75조가 적용될 것이다.

한편, CISG 제76조 제2항에서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 지배적인 가격 또는, 그 장소에서 아무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그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가(current price)는 매수인의 국가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45) 서건환, 전게서, p. 131.

46) 석광현, 전게서, p. 291.

말한다.<sup>47)</sup> 또한 시가와 관련해서는 CISG 제55조를 유추적용할 경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되는 동일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이라 해석할 수 있다.<sup>48)</sup> 요컨대, 시가의 시간적 기준으로는 첫째, 계약해제 후 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둘째, 만약 물품의 수령 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물품수령의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가의 장소적 기준으로는 첫째, 물품이 인도되어야 했던 장소가 원칙이며, 둘째,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경우 그러한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로 해석될 수 있으나<sup>49)</sup> 다만 이러한 경우 물품 운송비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 원칙을 정한 제74조에 의한다.<sup>50)</sup> 여기서 ‘인도되어야 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CISG 제31조를 참조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물품이 도착한 후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CISG 제75조의 대체구매 및 대체매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sup>51)</sup>

### 3. 손해경감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CISG 제77조에서는 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감액을 제시하고 있다. 손해경감의무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규정으로서 피해당사자는 계약 위반으로부터 손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는 CISG 제7조의 신의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손해의 확산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당해 규정은 CISG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52)</sup>

47) 시가는 관련 물품을 쉽게 인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제3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이용가능시장(available market)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48) 석광현, 전계서, p. 293.

49) 오세창, 전계논문, p. 56.

50) 석광현, 전계서, p. 293.

51) 오원석, 전계역, pp. 575~576.

52)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가장 저렴한 산정기준을 선택하거나 대체물 인도청구 대신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같이 위반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한편 CISG가 계약위반의 시점을 의무의 이행기뿐만 아니라 이행기 전으로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경감의무 역시 당해 시점들에서 각각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 전에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임이 명료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 대체구매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ISG 제77조의 2문에서는 손해경감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당사자가 그러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만큼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에 감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문은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CISG 제62조의 대금청구권이나 제50조의 대금감액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up>53)</sup>

## V. 결 론

구제권의 하나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당사자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극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법계, 국내법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GA와 CISG상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비교·검토를 통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당해 법규범들의 차이점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SGA와 CISG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구조이다. CISG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SGA의 경우 관련 규정의 기술적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권에서 각기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석광현, 전거서, pp. 293~294, 인용).

53) CISG 제정작업시 손해배상액의 감액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손해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당사자의 기타 구제방식을 조정, 수정하여 손해경감의무의 위반 효과가 손해배상액의 감액뿐만 아니라 대금청구권과 대금감액권에도 미치게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특정이행이나 계약해제를 수정하는 재량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며, 손해경감의무의 위반효과가 대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당해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ecretariat Commentary on the 1978 Draft, Art. 73; 강병창, 국제통일매매법, 형설출판사, 2000, pp. 216~217, 참조).

둘째, **SGA**와 **CISG**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목적은 동일하다. 양 법규범 모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완전배상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만 **SGA**의 경우 영미법의 특징으로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CISG**의 경우 다양한 구제권을 제안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부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된 일반원칙에 있어 양 법규범들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가 예견가능 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SGA**의 경우 계약위반과 손해의 관계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검증(*foreseeability test* 또는 *remoteness of damages*)이 필요하다. 즉 인과관계에서 근인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배제하고 있으므로 **CISG**보다 계약위반과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SGA**와 **CISG**의 양 법규범들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CISG**의 경우 계약을 해제한 후 대체거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계약대금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반면에 **SGA**의 경우 물품의 인도 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CISG**와 달리 특별한 상황에서의 상실분에 대한 제한적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통일법으로서 **CISG**와 국내법으로서의 **SGA**를 비교·검토하였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 무역상무계에서는 예견가능성을 통한 손해배상의 요건 충족과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병창, 국제통일매매법, 형설출판사, 2000.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 민주희, “SGA에서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서건환, 국제거래계약실무, 한국금융경제연구소, 1998.
-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2002.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결과적 손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5.
- 오세창, “국제물품매매계약하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 오원석,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 윤광운·박정기·최영봉·조현숙, 영국물품매매법, 탐북스, 2011.
-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 황지현·최영주, “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CISG(1980)와 PICC(2004)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Andrew Burrows, “Legislative Reform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English Perspective”, *EDINBURGH Law. Review* 155, 1997.
- Chen-Wishart, Mindy,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Ewan McKendrick, “The Common Law at Work: The Saga of Alfred McAlpine Construction Ltd v Panatown Ltd.”, *Oxford University Commonwealth Law Journal* 3(2), 2003.
- Franco Ferrari, “Homeward Trend and Lex Forism Despite Uniform Sales Law”, 13 *Vindobona J. Int'l. L. & Arb.* 15, 2009.
- Goode, Roy, Herbert Kronke, and Ewan McKendrick,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Harris, Donald, David Campbell, and Roger Halson, *Remedies in Contract and To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Reza Beheshti, "Comparative and Normative Analysis of Damages Under the SGA and the CESL", *St. Thomas Law Review* 26, 2013.

Treitel, Guenter H,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A Comparative Account*,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1988.

## ABSTRACT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Damages in the International Sale Laws**

Hyon-Sok OH

This study compares the SGA and CISG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nd it intends to give some important points in trade practice.

The damages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breach of contract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GA and CISG as follow.

First, the SGA and CISG have the same purpose of claiming damages. Both laws and regulations are subject to a full indemnification to compensate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b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suffered by the victim.

Second, in the general principle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damages, both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required to be able to predict damages caused by breach of contract. In the case of SGA, however, a foreseeability test or remoteness of damages is requir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los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contract violation and the damage is strictly applied rather than the CISG.

Finally, both laws and regulations of SGA and CISG have a big difference in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In the CISG, after the contract is canceled,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alternative transaction and the damage amou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On the other hand, the SGA estimates the loss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delivery of the goods,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market price instead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Keywords : Damages, liquidated Damages, foreseeability, Mitigation